

#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864
----------	-----

제출연월일 : 2000. 3.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상수도관로 이설요청이 증가하고 각종 도로 굴착공사로 인하여 상수도관로의 파손이 다발하는 실정이므로
- 수도시설 이설 등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 및 수도시설을 손괴한 손괴자에게 비용발생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효율적 징수와 수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가. 수도시설을 손괴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직접 손괴가 아닌 경우에도 누수발견 시에는 시장에게 신고 및 사유지경계선 내의 수도시설에 대한 파손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수도관 이설 등 비용발생의 원인에 대한 비용과 원인자는 공사시행전 시장에게 수도 공사요청 및 공사비납부 하도록 함. (안 제5조).
- 다. 수도시설 손괴시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 손괴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비용을 정수 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상수도공사 하자기간 내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하며 긴급누수 발생시 우선 복구후 손괴자부담금을 징수 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공사시공자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함(안 제11조).
- 바.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시설물 설치 금지와 타 시설물 철거 또는 이설 요구도록 함(안 제12조).

제정조례안 : 별첨

입법예고결과

- 예고기간 : 2000. 2. 11 ~ 2000. 3. 1(20일)
- 예고결과 : 이의사항 없음

기타 참고사항

- 수도법 제51조, 제53조,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 지방세법 제28조, 제7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상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 2.“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 3.“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4.“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5.“도로복구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6.“도로결빙방지작업비”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7.“출동작업경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 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 및 직원 등의 경비를 말한다.
- 8.“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산출세부기준) ①영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와 도로복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 또는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적용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의 업종의 구분에 의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방지 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92 (부록)

5.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 작업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한 여비로 한다.
6.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 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손괴자 등의 의무) ①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안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도서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 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 불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지하 매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 등의 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상수도공사의 하자기 간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우선 복구

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원상복구 등에 관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차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그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여 원인자에게 문서로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시행자)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공사는 현장여건,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손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손괴자부담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